

|        |             |
|--------|-------------|
| 의안번호   | 2213800     |
| 의 퇴 인  | 정춘생의원       |
| 회 답 일  | 2025.12.10. |
| 추 계 번호 | 25C5759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3조<br>(장기요양급여<br>제공의 기본 원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과 이중돌봄(자녀·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질병, 장애,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제2항)</li> </ul> | 의무규정 |

##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 연번 | 조·항(조제목)                       | 미첨부 근거 규정                                                                                            |
|----|--------------------------------|------------------------------------------------------------------------------------------------------|
| 1  | 안 제4조<br>(장기요양급여<br>제공의 기본 원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li> </ul> |

###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이중돌봄 가정의 상황을 고려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이와 비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과 국가 재정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과 장기요양인정서 작성 시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신규 수급자가 많아질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증가하게 됨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sup>1)</sup>.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추가지출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sup>2)</sup>,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 회계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추가지출 금액의 20%를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로 볼 수 있음<sup>3)</sup>

□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할 수급자 수와 급여 수요를 파악해야 하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현재 장기요양 수급자격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성되며, 각 등급별로 급여 비용과 한도액에 차이가 있음
  - 예시로, 2025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인지지원등급 65만 7,400원에서 1등급 230만 6,400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수급자의 등급이 상향되거나 신규로 수급자격을 얻는 가입자가 있을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현시점에 이 규모를 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1)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함.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자체는 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2)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장기요양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 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함.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 지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 Ⅲ. 작성자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사회비용추계과 | 임슬기 | 이진우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임슬기 | 02-6788-4740 | sg.lim@assembly.go.kr |